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

(신동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4.

발의의원 : 신동윤 의원,

신달호 의원, 박영동 의원

1. 제안이유

「건축법」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오랫동안
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
으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축법」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상의 도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건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도로의 지정)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

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
2. 전기·수도·하수도·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
3. 복개된 하천,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
4.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
5.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
6. 그 밖에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도로관리대장 작성)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경우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대장 서식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를 따른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군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상의 도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건축법」(2025. 8. 26. 일부개정, 2026. 2. 27. 시행)

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·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

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,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.